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30.(화)

| 검 토 안 건                       | 발 의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br>전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 1. 회부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교육지원과).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24)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존 조례의 명칭 변경
  - 기존 교복 지원 조례의 명칭을 입학준비금 시행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교복 지원 →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변경)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21.09.30 ~ '21.10.27)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등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입학준비금이란 지원대상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 등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 마포구에서는 2018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구비 100%를 부담하여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50%) - 서울시(30%) - 자치구(20%)간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은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임.

**< 마포구 교복지원·입학준비금 연도별 사업 집행 및 예산 현황 >**

| 구분       | 연도   |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 지원 총액                | 비 고   |
|----------|------|--------------|--|----------------|----------------------|---|
| 교복 지원 사업 | 2019 | 중학생          | 30만원<br>(현금)                               | 2,433명         | 723,759천원            | 구비 100%   |
|          | 2020 | 중학생          | 30만원<br>(현금)                               | 2,696명         | 761,247천원            | 구비 100%   |
| 입학 준비금   | 2021 | 중고등학생        | 30만원<br>(제로페이<br>상품권)                      | 4,931명         | 300,278천원            | 50%:30%:20%<br>(교육청:시:구)                                    |
|          | 2022 | 초·중·고등<br>학생 | 초등<br>20만원<br>중고등<br>30만원<br>(제로페이<br>상품권) | 6,867명<br>(예정) | 414,739천원<br>(예산 편성) | 초등 40%:30%:30%<br>(교육청:시:구)<br>중고등 50%:30%:20%<br>(교육청:시:구) |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입학준비금 시행으로 인한 기존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학준비금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학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입생이 입학준비금이 지원되지 않는 타 시·군·구 소재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와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효율적인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나 다른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으로 시행되는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 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입학 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위배사항이나 자구 등에도 문제가 없음.

※ 참고자료

1. 관련법규
2. 비용추계서

## [ 관계법령 ]

### 교육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K신설 2021. 9. 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30.(화)

| 검 토 안 건                        | 발 의 |
|--------------------------------|-----|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br>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구청장 |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 1. 검토안건

- 안전명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교육지원과)
- 제출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의안번호 : 21-125)

## 3. 제출이유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최초 민간위탁 이후 6년이 경과하고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재계약) 내용

1) 위탁기간 : 3년

※ 최초 민간위탁일 : 2013년 6월 10일.

2)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소재지                         | 규모  | 정원 |
|--------------|-----------------------------|-----|----|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성산로 128, 5층 일부<br>(마포중앙도서관) | 98㎡ | 5명 |

위치도



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연도별   | 사업비용      | 세부내역                           | 비고                           |
|-------|-----------|--------------------------------|------------------------------|
| 총사업비  | 1,211,632 | 시비(시교육청) 407,930 구비 803,702    |                              |
| 2022년 | 392,000   | ○인건비 : 213,000 ○운영비 : 179,000  | -시 : 129,400<br>-구 : 262,600 |
| 2023년 | 403,760   | ○인건비 : 214,065 ○ 운영비 : 189,695 | -시 : 135,870<br>-구 : 267,890 |
| 2024년 | 415,872   | ○인건비 : 220,486 ○ 운영비 : 195,386 | -시 : 142,660<br>-구 : 273,212 |

## 다. 세부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방침 수립 : 2022.1.~2.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추진 : 2022.2.~3.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체결 : 2022.3.

## 5. 관계법령

- 가.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및 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6. 검토의견

- 본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2013년 6월 10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참고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무의 재계약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금번 회기에 제출됨.
- 따라서,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 자료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

### < 진로교육법 >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20조(진로체험 지원)

-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등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 발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 비용추계서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금액) 및 제7조(다른기관과의 협력)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20년도 서울시 복지대타협 TF 추진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학준비금 전면 시행에 의거, 마포구 관내 중·고등학교 연도별 입학생 수에 따른 분담액 지원 (교육청비 50%, 시비 30%, 구비 20%)
- 나. 마포구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 다. 비용추계기간 : 2022. 1. ~ 2026. 12. (60개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br>(2022년) | 2차년도<br>(2023년) | 3차년도<br>(2024년) | 4차년도<br>(2025년) | 5차년도<br>(2026년 이후<br>계속) | 합계        |
|-------------|--------|-----------------|-----------------|-----------------|-----------------|--------------------------|-----------|
|             | 세입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세출          | 시비 보조금 | -               | -               | -               | -               | -                        | -         |
|             | 구비 보조금 | 260,065         | 273,068         | 286,721         | 301,057         | 316,109                  | 1,437,020 |
|             | 소계(b)  | 260,065         | 273,068         | 286,721         | 301,057         | 316,109                  | 1,437,020 |
| □ 총 비용(a-b) |        | 260,065         | 273,068         | 286,721         | 301,057         | 316,109                  | 1,437,020 |

※ 연도별 1학년 입학생 인원 추이 변화에 따라 분담액 증감될 수 있음

#### 4. 재원조달 방안

- 가. 마포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분담액 지원

#### 5. 덧붙이는 의견

-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오재은 (☎ 3153-8594)